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3
----------	-----

2025. 9. 1.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12명 발의)
-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5. 9. 1.)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노애자 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조사결과에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제정 취지 및 배경

○ 여론조사의 개념

- 여론조사(輿論調査)는 사회 구성원인 사람들이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선거권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효력을 갖는 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짐.
- 도입 초반에는 모의투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견을 미리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20세기 초부터 언론기관들이 여론조사를 선거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다만,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질문 내용 및 순서, 조사시점 등의 요인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완벽한 예측을 보장하는 여론조사는 존재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 여론조사 준수 의무 및 규제

-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했음.

- 또한, 2017년 선거여론조사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였고, 202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면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함.

< 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 요건 >

물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 위 시스템 및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 포함)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 위 조건을 갖추어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정하여진 12가지 사항(조사 의뢰자,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 응답률, 질문 내용 등)을 함께 공표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다만,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수행주체, 여론조사의 수행·공표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히려 사실상의 검열로 작용할 위험과 인권적 차원의 우려가 있다고 공식적 의견표명을 결정함.¹⁾
- 여론조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고, △공공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율적인 표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 하였음.
- 여론조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여론조사도 수행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²⁾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2) 「공직선거법」 제8조의8

< 일반 여론조사 >

- 정책 · 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특정인 또는 단체 성명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순수한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나. 검토 내용

○ 목적 규정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방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규정임.

○ 용어 정의 규정

-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여론조사는 주민 의견을 수집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쟁점 등 공공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임.

○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3조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여론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그 조사에 투입된 비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자의적 여론조사 시행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 사전에 의회 보고를 통하여 실시 필요성을 확인해줄 것을 구청장 책무로 규정하였고 타당하다고 보임. (※ 수정의견: 제3조제2항 중 붙여쓰기: 시책v사업 → 시책사업)

○ 적용 범위 규정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적용하는 주요 범위를 정하되, 구청장이 시책사업 추진 등을 전제로 구청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전적 성격의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4조제2항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적용 제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다만, 안 제4조제1항제3호는 제도적 장치라고 해석되며, 이에 따라 특정한 사회적 문제 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청장이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에 여론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기본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임.

○ 조사 방법 규정

- 안 제6조는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여러 가지 조사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임.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질문지 구성 내용으로 인하여 편향된 응답이 유도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포함시켰으며 타당하다고 보임.

○ 조사 의뢰 규정

-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단체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임. △여론조사의 직접 실시가 어렵거나, △여론조사에 대한 주제별 전문성이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조례 시행 이후에는 내부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 의뢰를 위한 기관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2023년 상위법령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한 이후 주요 업종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면서 실제로 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 중인 여론조

사 기관·단체 수는 제한적이므로, 업체에 대한 검증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용역의뢰 단계부터 해당 사안에 적합한 업체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임.

○ 조사결과 공개 규정

- 안 제8조는 여론조사 시행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의 원칙을 명시한 것임.
최근 몇 년간 여론조사의 본래 목적인 국민들의 헌법상 자유 보장을 충족
시키면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도 수용해야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은 부실조사 방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됨. (*수정의견: 제2항 중 띄어쓰기: 조사v일시)
- 다만, 조사의 일부 방법만 기재하여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이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후 규칙이나 내부규정을 정하여
조사결과 공개 시 앞의 제6조에 따라 적용한 조사 방법을 반드시 기재하
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한 경우 그 조사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음.

○ 비밀준수 규정

- 직무윤리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선언적 차원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됨.

다. 종합 의견

○ 주민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주민참여 제고

- 강남구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의가 있
다고 생각됨. 여론조사에 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28개) 중에서 서울
특별시 자치구 단위에서는 2025년 5월 영등포구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음.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5개는 지방의회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
론조사를 규정한 것임.
- 다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으므로, 제정 및 공포 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등으
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음. *업체선정 등

○ 성숙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여론조사

- 여론조사는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본연의 목적과 순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민의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여론조사의 생산·소비·유통 과정에서 조사의뢰자, 전문기관, 정보이용자 모두가 건전한 조사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됨.
- 위의 내용을 전제로 강남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분쟁 소지가 있거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정책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민의를 반영할 대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정책을 사전 또는 사후에 검증하고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임.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행정기본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824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자료

[붙임 1] 각 지방자치단체별 여론조사 관련 조례

(2025. 7. 기준)

순번	지자체명	법령명	부서	제정일자
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	의회사무처	2025. 6. 5.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2021. 10. 1.
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의정담당관	2023. 11. 15.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의회사무처 소통홍보담당관	2025. 7. 18.
5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의회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의회사무과	2025. 1. 9.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	기획예산과	2025. 5. 15.
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여론조사 조례	기획실	2017. 10. 11.
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	시민소통과	2023. 7. 1.
9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기획팀	2025. 3. 10.
1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	기획예산과	2017. 3. 28.
1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	기획예산과(기획)	2016. 9. 23.
13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론조사 조례	청렴감사실	2021. 9. 23.
14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	정책소통과	2021. 12. 30.
1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	평가통계담당관	2021. 5. 10.
1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	홍보담당관	2018. 2. 7.
17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	기획감사담당관	2016. 12. 23.
18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여론조사 조례	기획감사실	2025. 2. 11.
19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기획감사실	2017. 1. 1.
20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조례	기획감사실	2025. 4. 30.
21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	기획과	2024. 12. 31.
22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	정책기획과	2020. 12. 10.
23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	기획예산과	2016. 7. 15.
24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2025. 4. 8.
2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2020. 10. 30.
2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	기획예산과	2023. 11. 10.
27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	정책기획과	2017. 5. 1.
28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	정책기획과	2015. 11. 13.
2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2019. 9. 27.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5. 9. 1.)

- 질 의 : 구청장 책무 중 여론조사 시행 전 의회 보고 절차가 있는데 의회 의견이 여론조사 실시 반대의 경우 합의 방안은 어떤가
- 답 변 : 사전보고의 절차는 여론조사 예정임을 의회에 알려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예정을 의회에 알리는 게 큰 목적이며 의회에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의미는 아님. 여론조사 실시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질 의 :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론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 답 변 : 기금은 사용 결정 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며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라, 기금 사용에 대해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론조사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론조사 제외 사항으로 조례안에 규정한 것임
- 질 의 : 여론조사 조례 제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민간위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답 변 : 타 시도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24개 자치구 및 광역 조례가 있는데 여론조사 통계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곳은 경기도 10억 7,400만원, 광주광역시 4,000만원 정도임. 기존에도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 않아 여러 지자체도 여론조사 특정 항목으로 예산편성 사례는 적은 것으로 생각됨. 용역사업 등의 경우 중장기 계획이나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여론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

7. 토론 요지

- 조례 해석 및 집행 상 혼돈이 우려되는 부분을 없애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조 제목과 용어의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553호

발의일자 : 2025. 9. 1.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해석 및 집행 상 혼돈이 우려되는 부분을 없애도록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함
- 조문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 제목을 수정함
- 일부 띄어쓰기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조례 해석 및 집행 상 혼돈이 우려되는 부분을 없애도록 조문을 삭제함(제4조 제2항제3호)
- 조례 집행 방식이 명확하도록 조문을 수정함(안 제8조제2항)
- 조문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도록 조 제목을 수정함(안 제8조 제목)
- 일부 띄어쓰기를 수정함(안 제3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책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조사결과의 공개)”를 “(조사결과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를 “홈페이지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사 일시·방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주요 <u>시책 사업</u>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4조(적용 범위) ① (생 략)</p> <p>1. ~ 3.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p> <p>1. ~ 2. (생 략)</p> <p>3.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p> <p>4. (생 략)</p> <p>제8조(<u>조사결과의 공개</u>)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u>주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u> 공개해야 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원안과 같음)</p> <p>② ----- <u>시책사업</u> ----- ----- -----.</p> <p>③ (원안과 같음)</p> <p>제4조(적용 범위) ① (원안과 같음)</p> <p>1. ~ 3. (원안과 같음)</p> <p>② ----- ----- -----.</p> <p>1. ~ 2. (원안과 같음)</p> <p>3. < 삭 제 ></p> <p>3. (원안 제4호와 같음)</p> <p>제8조(<u>조사결과의 공개 등</u>) ① (원안과 같음)</p> <p>② ----- ----- ----- <u>홈페이지에</u> ----- -----.</p>

1. (생략)

2. 조사일시·방법

3. ~ 7. (생략)

③ (생략)

1. (원안과 같음)

2. 조사일시·방법

3. ~ 7.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체계적·과학적 방법으로 수집하여 파악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시책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추진·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운영 방향의 모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

3.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제안 및 개선안 수집 등 단순한 의견 수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사 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 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연령별·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계층 등을 특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론조사 시 질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여론조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4. 피조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 ⑤ 여론조사 시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할 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7조(조사 의뢰)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2. 조사 일시·방법
3. 조사 대상(표본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4. 응답률
5. 표본오차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7. 설문내용

③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권익이 공정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노애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3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노애자·이성수·윤석민·

김형곤·복진경·이향숙·

김진경·전인수·강을석·

이동호·김광심·한윤수 의원

(이상 12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체계적·과학적 방법으로 수집하여 파악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시책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추진·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운영 방향의 모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
3.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4.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제안 및 개선안 수집 등 단순한 의견 수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사 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 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연령별·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계층 등을 특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론조사 시 질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여론조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4. 피조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⑤ 여론조사 시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할 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7조(조사 의뢰)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2. 조사일시·방법
3. 조사 대상(표본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4. 응답률
5. 표본오차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7. 설문내용

③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구민의 권익이 공정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